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70
----------	-------

발의연월일 : 2023. 12. 26.

발 의 자 : 이주환 · 김성원 · 최영희
전봉민 · 김학용 · 백종현
구자근 · 김용판 · 정운천
이헌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부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의사가 진료부등을 임의로 발급 거절하는 경우 그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제3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 발급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2호의3 및 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의 발급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 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 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u><신 설></u>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 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 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③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 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 사자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 우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제3항에 따른 진 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 발급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한다.</u>

제41조(과태료) ① (생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u> <u>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부 또는</u> <u>검안부의 사본의 발급을</u> <u>거부한 자</u>
<u>2의2. 2의3.</u> (생략)	<u>2의3. 2의4.</u> (현행 제2호의2 및 제2호의3과 같음)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